

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관련 제출서류

구 분	사업절차	제출서류	
사업허가 및 공사	발전사업허가	① 전기사업허가신청서, ② 사업계획서(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서식), ③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계획 관련 증명서류, ④ 송전관계 일람도, ⑤ 발전원가명세서	
	개발행위허가	① 개발행위허가신청서, ②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, ③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, ④ 설계도서, ⑤ 건축물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, ⑥ 개발행위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·세목·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, ⑦ 위해방지, 환경오염방지, 경관,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, ⑨ 국토계획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	
	전력 수급계약	신청시	① 전기사용신청서, ② 전력구입계약신청서, ③ 발전사업허가증 사본,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, ⑤ [개인]소유주신분증, [법인]법인인감증명서, ⑥ 내선설계도면, ⑦ 발전설비 시험성적서 사본, ⑧ 개발행위허가서, ⑨ 공사계획신고필증 [고압설비만 해당]
		공사준공시	① 사용전검사필증, ② 안전관리자 선임필증(용량20kW초과시), ③ 발전계기시험성적서(용량500kW이상시)
		계약체결시	① 표준전력구입계약서, ② 병렬운전조작합의서, ③ 계좌이체거래약정서
	공사계획신고	① 공사계획신청서, ② 공사계획서, ③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「전기사업법」 시행규칙 별표8의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, ③ 공사공정표, ④ 기술시방서, ⑤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2조의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, ⑥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	
	사용전검사	① 사용전검사신청서, ②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, ③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2조의제4항에 따른 감리원배치확인서, ④ 자체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	
개발행위준공검사	①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, ② 준공사진, ③ 지적측량성과도, ④ 국토계획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		
발전 및 사업운영	사업개시신고	① 사업개시신고서, ②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ex. 설치현장사진, 사용전검사필증사본, 전력수급계약서사본 등)	
	RPS 설비확인 신청	①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,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, ③ 발전사업허가증 사본, ④ 사용전검사확인증 사본, ⑤ 견적서/비용산출 내역서 사본, ⑥ 설치현장사진, ⑦ 단선결선도, ⑧ 정보제공동의서, ⑨ 총 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확인서, ⑩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번호, 상업운전개시일, 한전고객번호(별도인입에 한함) 확인서류, ⑪ 신재생에너지설비(모듈, 인버터) 인증서 사본, ⑫ 설치도면, ⑬ 건축물대장 또는 시설물증빙서류, ⑭ 토지대장, 토지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, ⑮ 동일사업자의 인근지역 설치용량확인서(일반부지 설치설비), ⑯ 태양광발전소 분할 여부 확인서(일반부지 설치 설비), ⑰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서, ⑱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	

※ 구비서류는 지자체별, 설비조건(건축물, 비건축물) 등으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세내역은 해당 지자체나 제출 기관에 문의바람